대통령 약속 '어버이날 공휴일' 될까

18·19대 대선후보 시절 공약 제시
법개정 없이 국무회의 의결 가능
지정 땐 올해 4일간 황금연휴 성사

5월 8일 어버이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공약이 지켜질지에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는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어서 다음 월요일인 5월 7일이 대체공휴일이다. 이에 따라 5월 8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5일(토)부터 8일(화)까지 나흘간 '황금연휴'가 만들어진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해 5월 7일 "해마다 가장 많은 국민이 5월의 가장 중요한 날로 어버이날을 꼽는다. 하지만 쉬지 못하는 직장인들에게 어버이날은 죄송한 날이 되고 있다"며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2012년 12월 18대 대선 후보 시절에도 노인복지 분야 공약으로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국경일 중에서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

또, 신정(1월 1일)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 선거일, 설연휴(설과 전날·다음날), 추석연휴(추석과 전날·다음날), 그리고 일요일까지 공휴일이다.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대체공휴일제'는 설연휴와 추석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4월 30일 석가탄신일에 "내년에는 부처님오신날로 인사드리겠다"고 한 약속은 이미 지켰다. 정부는 작년 10월 10일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중 '석가탄신일'의 명칭을 '부처님오신날'로 개정했다.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대통령령이라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관보에 게재하면 바로 시행된다.

규정을 개정하려면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사를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어버이날을 한 달 남겨둔 현시점에 신속히 절차를 밟아야 올해부터 적용할 수 있다. 통상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지만,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제처장과 협의해 입법예고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한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는 관공서 근로자, 즉 공무원들에게만 효력을 미친다.

대기업들은 노사 단체협약·취업규칙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과 임시공휴일까지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보장하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다.

/박승아 기자 tmddk9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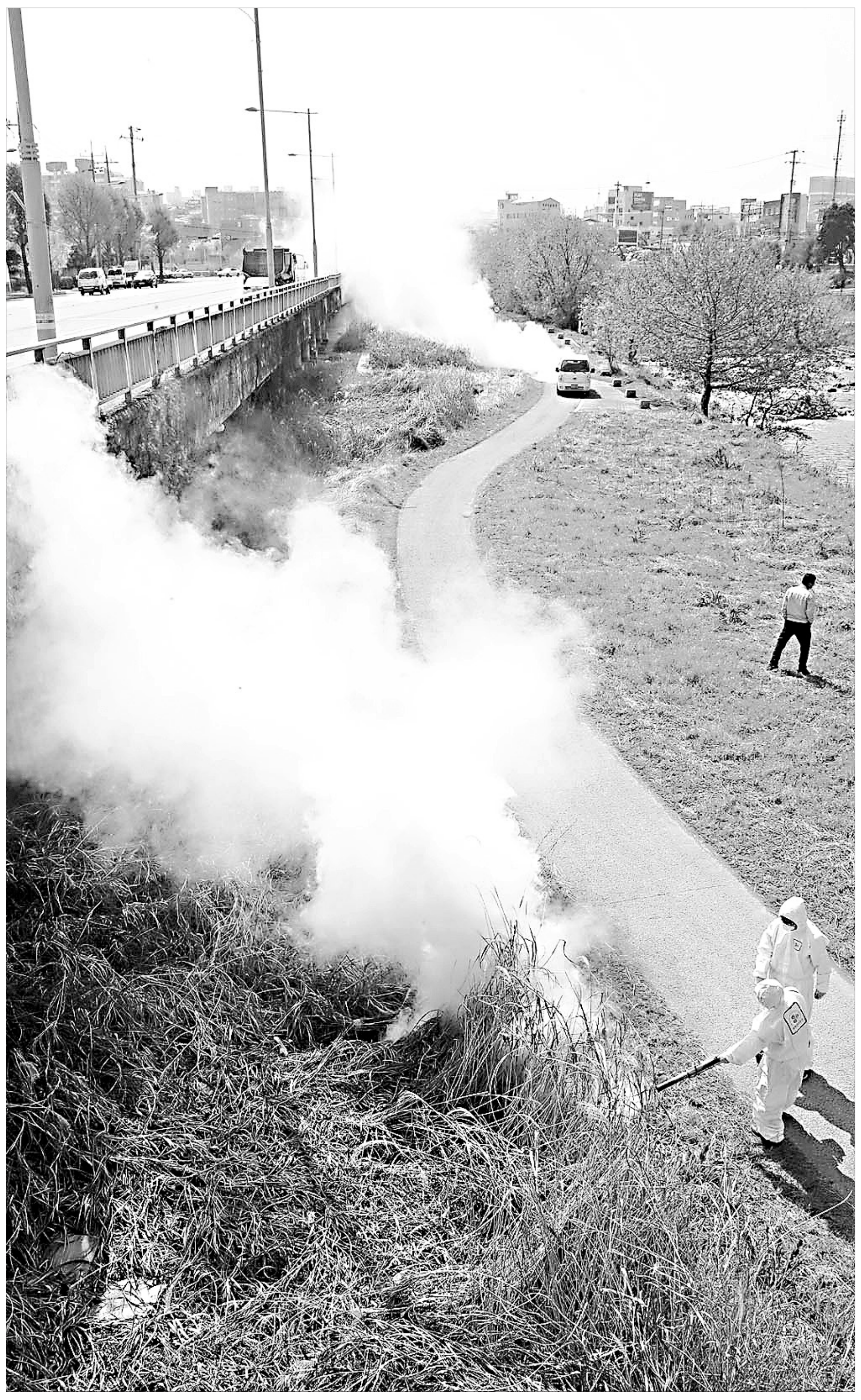

뇌염모기 예방 긴급 방역 9일 오전 광주 북구 임동 광주천변에서 북구보건소 방역반원들이 모기 퇴치와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해 긴급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광주 북구청 제공

'여교사 성폭행' 파렴치범 오늘 대법 선고

'공모 여부' 쟁점…1·2심 부정→대법 파기→환송심 인정

섬지역 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법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12년, 10년을 선고받은 섬마을 학부모들의 두 번째 대법원 선고가 10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39), 이모(35), 박모(50)씨의 상고심 결과를 선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 5월 21일 오후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자정을 기준으로 두 차례 범행을 저질렀는데 1차 범행에서는 피해자가 저항해 범행에 실패했고, 이후 이들은 범행을 재시도해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재판에서는 1차 범행에 대해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다.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면 각자의 성폭행 미수 범행에 대해 공동책임을 지게 되지만, 부정되면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만 벌을 받게 된다.

1심은 "1차 범행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선처 탄원 등을 이유로 각각 징역 7~10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차 범행에 대해 공모공동정범, 합동범을 인정할 수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이에 다시 열린 파기환송심은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각자 차량을 이용해 비교적 일사불란하게 범행 장소로 이동했다가 각자 주거지로 돌아온 과정 등을 감안하면 합동 또는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엄마와 다투다 화가나 불질렀다"

광주 북부경찰, 상습 방화 30대 아들 검거

어머니와 다투다가 울분을 참지 못해 불을 지르는 등 '화가 난다'며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8일 14명이 투숙 중인 모텔에 불을 지르는 등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이모(35)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이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시 32분께 광주 북구 한 모텔 2층과 옥상에 각각 놓인 세탁기 2대에 잇따라 불을 질러 시가 135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3일 오전 1시 4분께 광주 북구에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인 한 원룸에 들어가 불을 질러 1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방화 전과만 3범인 이씨는 사건 당일 어머니와 사소한 문제로 다툰 뒤, 어머니가 월세를 내고 사는 모텔에 찾아가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불을 지르기 전에 공중전화로 "불났다"고 119 상황실에 전화해 신고하고, 모텔로 들어가 2층과 옥상에서 연이어 라이터로 세탁기에 불을 질렀다. 이후 큰 불로 번질까 봐 겁이 나 다시 119에 신고했다.

불은 신속히 출동한 119 소방대원이 진화해 객실 안으로 번지지는 않았다.

세탁기에서 잇따라 불이 난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공중전화에 남긴 이씨의 지문을 확인하고 검거했다.

어머니·동생과 폐지를 주우며 생활하는 이씨는 평소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불을 지르는 성향을 보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경찰에게 붙잡힌 이후 지난 2월 원룸에 불을 지른 사실을 추가로 털어놨다.

경찰은 이씨가 누범 기간 자칫 대형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뻔한 불을 질러 죄가 무겁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박승아 기자 tmddk9960@

가스레인지 켜놓고 집 비운 사이에

80대 실수 불…인명피해 없어

80대 노인이 사는 주택에서 화재로 자칫 인명피해가 날 뻔했으나 주택용 화재경보기 덕분에 큰 피해를 면했다.

9일 광주 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7일 낮 12시 5분께 광주 동구 산수동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주택에 사는 A(81) 할머니가 점심 요리를 위해 켜 놓은 가스레인지에 불이 났다.

식용유를 두른 프라이팬을 가스레인지에 올려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기름에 불이 옮겨붙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큰불로 번지기 직전, 불을 껐다.

이 불로 A 할머니의 주택은 주방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5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이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을 뒤늦게 발견했다면 큰 화마로 번질뻔했으나, 주택용 화재경보기가 자동으로 울리면서 A 할머니는 비교적 빨리 불이 난 사실을 알아채고 119에 신고했다.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 신속하게 화재 발생 사실을 알아채고 대처할 수 있어 소중한 가족과 재산을 지키는 필수 시설"이라며 주택화재경보기 설치와 소화기 구비를 당부했다.

/박승아 기자 tmddk9960@

jndomin.kr

희망을 배달하는 신문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린 수 없이 많은 정보들을 필요로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제, 스포츠등
신문은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유용한 정보의 힘을 줍니다.

전남도민일보
61247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 (유동) 소석빌딩 5층
T 062 227 0000 F 062 227 0084 www.jndomin.kr